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2617호

제출년월일 : 2021년 6월 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 교육정책과 관련한 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증진을 위해 구성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 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 마련, 임원의 역할 명기 (제4조 임원)

나.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제5조 임원의 임기)

다.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라.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 (제12조 경비부담)

마.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바. 운영세칙 조항 정비 (제15조 운영세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를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총장을 선임한다”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같은 조 제6항 중 “처리한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을 “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항을 검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를 “회원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를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 사항을 처리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를 “전체 회원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부된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4.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제13조제2항 중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5조 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를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1.17.)	1.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 1명 도입 2.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회장도시 지자체에 사무국을 두는 조항 삽입 3. 사무국 설치 조항에 따라 사무총장 역할 변경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개정 2020.11.17.)	
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삭제>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⑤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20.11.17.)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11.17.)	
제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7.)	1. 사정에 의한 임원 임기 변동에 따른 임기 해석 조항 마련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한다. (개정 2020.11.17.)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0.11.17.)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원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개정 2020.11.17.)	1.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항 정비 2. 현재 운영되는 실무협의회의 상황에 맞춰 구성원을 전체 회원도시로 명시, 아울러 교육청 소속 공무원 삭제 (필요시 참여) 3. 실무협의회 구체적 역할 명시 4. 실무협의회 결과에 대하여 전체 회원도시와 공유하는 근거
제12조 [경비부담] 협의회 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② 납부된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4.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개정 2020.11.17.)	1. 협의회 분담금 납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정비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7.)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개정 2020.11.17.)	1. 협의회 회계 관장에 대하여 사무국(회장도시)로 명시 2. 결산보고에 대한 시점 구체적 명시 3. 감사 지자체의 결산 근거 조항 마련

개정 전	개정 후	사유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11.17.)	1. 규약 외의 운영 세칙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정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8. 3. 31 제정
2020. 11. 17 개정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20. 11. 17.〉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개정 2020. 11. 17.〉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20. 11. 17.〉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개정 2020. 11. 17.〉

제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11. 17.〉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7.〉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한다.〈개정 2020. 11. 17.〉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개정 2020. 11. 17.〉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원 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개정 2020. 11. 17.〉

제12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7.〉

② 납부된 부담금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4.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개정 2020. 11. 17.〉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1. 17.〉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개정 2020. 11. 17.〉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 11. 17.〉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